

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제협력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239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0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2021년 대외협력기금(국제계정)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금액이 당초보다 20% 초과 변경되었음.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(국제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,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1,380백만원에서 1,604백만원으로 224백만원 증가하였고,
- 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상 「재무활동」 금액이 당초 91백만원에서 315백만원으로 224백만원 증가하여, 20%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함.
- 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수입 계획			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1,961	2,185	224
일반회계 전입금	500	500	-
이자등수입	81	81	-
예치금 회수	1,380	1,604	224

지출 계획			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 (증감률)
계	1,961	2,185	224
사업비	1,865	1,865	-
기본경비	5	5	-
재무활동	91	315	224 (246%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국제교류담당관 국제정책팀 권은경(☎ 2133-5294)